

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의견서(서면회의)

□ 위원 소속 :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성명 : 박 근 수 (서명) 박근수

□ 제출의견

'19. 3. 28. ~ 4. 1. 일간 서면으로 개최되는 '제2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'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안 건 명	동의여부	검토의견
(안전) 2019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(안)	-	<p><통신관로 매설용 트렌칭 시범사업 실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법 시행령 별표2 개정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 폭 협소로 인해 지상기기 설치 불가로 전기선로 지중화가 힘든 골목길에 통신선로 지중화를 통해 미관 개선 및 정비효과 체감 증대 - 다만,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후 사업 시행

[별표2. 도로점용허가의 기준] (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관련)

마. 수도관·하수도관가스관·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. 다만,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.6미터 이상으로 한다.

다) 전기통신관 : 0.8미터 이상

※ 미니 트렌칭의 경우 0.3미터 이상

■ 기타 건의사항

〈KT 통신주 지중화 관련 건의사항〉

- 공중케이블 지중화사업 비용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한전, 통신사가 50%를 부담하고 있으나 KT 전주는 해당 법령에 미포함
- 2019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액의 이견차이로 KT-자치구 협약체결 지연
- 공중케이블 정비계획(공중선 정리 및 지중화)에 KT의 지중화 사업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수립 요청

〈트랜칭 공법 상용화로 통신선 지중화 확대추진 필요〉

- 공중선 정리사업 구역은 정비 후에도 가입자 신규설치 및 해지 시 폐선이 발생하거나 인입선이 난립되어 정비 체감효과가 떨어짐
 - 개발 중인 트랜칭 공법 상용화 시 공중선 정리사업 보다 통신선 지중화 사업비를 확대하여 미관개선 효과 및 정비 체감효과를 증대
-